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Trade Focus

Vol.13 No.30

무역조정지원제도, FTA 안전망 이상 무?

— 무역조정지원제도 활용 현황 및 사례 연구 —

2014년 7월

박지은 연구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목차

[요약]

I. 서론	1
II.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및 해외 제도 비교	3
1.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3
2. 해외 무역피해 지원제도	7
3. 한국과 해외 제도 비교	11
III. 무역조정지원사업 활용 현황 및 사례 연구	14
1. 무역조정지원사업 활용 현황	14
2. 무역조정지원사업 활용 기업 성공 사례	18
3.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제도 개선 요청사항	22
IV. 결론 및 향후 과제	23

- 요약 -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FTA 네트워크 확대에 따라 FTA로 발생하는 피해산업 지원을 위해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이 중 2007년부터 시행된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조업 및 서비스 기업, 근로자가 FTA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기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은 기업이 FTA로 인한 무역피해를 입증할 경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어 경쟁력 회복을 위해 융자 또는 컨설팅이 지원된다. 근로자의 무역조정지원은 무역피해로 실직하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되어 전직 또는 재취업 지원을 받게 된다.

해외에도 이와 유사한 무역피해 지원제도가 있으며 미국의 무역조정지원(TAA)과 EU의 유럽세계화조정기금(EGF)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제도에는 유사점이 많지만 미국은 근로자 지원 중심이며, FTA를 포함하여 수입증가에 따른 무역피해 전반에 대해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기업지원은 ▲인증기준이 덜 까다로운 대신 융자 혜택 없이 컨설팅 지원으로 한정되고, ▲무역조정제안 작성시 컨설팅이 제공되며, ▲구조조정 비용에 대해 기업 스스로의 부담 수준이 더 높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르다. 근로자 지원의 경우 우리나라와 무역피해 인증기준, 근로자 지원내용, 신청자격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EU의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은 수입 증가 및 경제 위기사 대량 실업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훈련제공을 통한 재취업을 지원하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 조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현재까지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시행한 결과, 41개의 기업이 평균적으로 3.41억 원의 융자 또는 컨설팅을 지원받아 구조조정을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무역조정 신청 건수는 연평균 10건 이하로 다소 저조한데, 이는 제조업 자체의 특성상 가격경쟁력 약화가 그대로 경영 악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신흥국 FTA의 경우 개방수준이 낮아 수입 증가효과가

작고, EU,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주로 대기업의 경합품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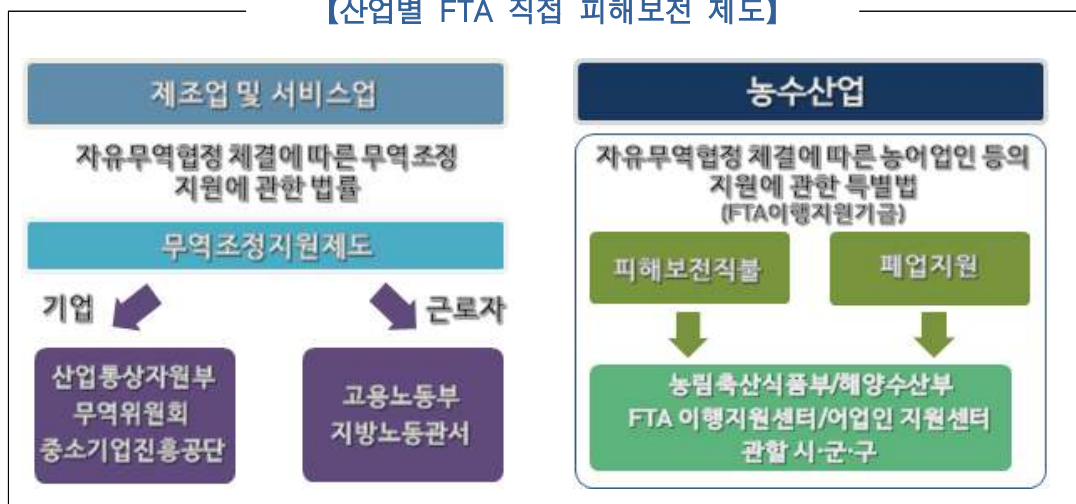
기업 지원의 경우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사업 및 품목을 다양화하며,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강화로 수입 상품과 차별화하는 등 성공적인 이행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을 무역조정계획 단계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전문가 풀 확보 및 컨설팅 사후평가 실시를 통한 컨설팅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무역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나 서비스 산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피해 인정 기준 및 지원내용 등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반면,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위해 근로자의 무역조정지원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FTA는 높은 무역 비중 및 경합 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 업계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무역조정지원제도는 피해산업을 지원하는 안전망으로 향후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중 FTA에 대비한 동 제도의 보완 및 재정비가 요구된다. 특히 구조조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근본적으로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 및 정부의 노력과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I. 서론

-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지난 10년간 꾸준히 FTA 네트워크를 확대한 결과 현재 9개의 협정, 47개국과의 FTA 발효. 이에 따라 FTA로 인한 피해산업의 지원을 위해 국내보완대책 마련
- FTA는 관세 절감, 교역 증대, 경쟁력 강화, 교역 다변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와 더불어 시장개방으로 발생하는 피해 산업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 우리정부는 시장개방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보전 및 해당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FTA 국내보완대책을 마련
 - 직접 피해보전책으로는 ▲농수산업의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제조업·서비스업을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있음

【산업별 FTA 직접 피해보전 제도】



- 경쟁력 강화대책으로는 ▲농수산업을 위한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시설 현대화, 종자산업 육성 등이, ▲제조업·서비스업에는 R&D투자 촉진, 수출활성화 등의 지원 정책 등이 있음

- 본 보고서는 FTA 국내보완대책의 직접 피해보전 제도 중 제조업 및 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도입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운영성과를 검토하고, 사례 연구를 통해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함
 - 2007년 동 제도 도입 이래, 현재까지 총 41개사가 지원을 받고 있어 수혜 기업 또는 근로자가 아직은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조정 성과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사례 분석을 통해 既발효된 FTA 하에서 무역조정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중소 제조 및 서비스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 및 시사점 도출

II.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및 해외 제도 비교

1.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1) 개요

- ☐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 및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FTA 국내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도입
 - o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06. 4월)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2007년에 도입¹⁾
 - o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을 공동 수립하여 시행 중
 - (기업) 기업의 무역조정지원을 위해 '07년부터 '14년까지 총 1,575억 원의 예산을 마련,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무역조정지원센터에서 지원
 - (근로자) 근로자의 무역조정지원을 위해 '07년 5조 8천억 원을 조성 하였으며, 현행의 고용안전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방노동관서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

(2) 주요 내용

- ☐ (무역조정지원기업) 기업이 FTA로 인한 무역피해를 입증할 경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며,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융자 또는 컨설팅을 지원
 - o FTA로 인한 무역피해가 인정되고 피해극복을 위해 적절한 조정계획을 수립하면, 무역위원회에서 무역피해 여부를 판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

1) 동 법안 시행 전까지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FTA 무역 피해 지원은 부재하였으며, 다만, 농수 산업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은 한·칠레 FTA를 계기로 2004. 3월에 도입되어 시행 중

〈기업의 무역조정지원사업 지원 절차〉



- FTA 무역피해는 ①FTA상대국으로부터 주생산품과 동종·대체가능한 제품(서비스)의 수입 증가 및 FTA 발효에 따른 관세율 인하, ②기업 매출액 감소(내수 감소분만 인정)가 동시에 충족될 때 인정

〈무역조정지원기업 피해 인정요건〉

구분	피해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청이전 2년 이내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10% 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신청이후 1년 이내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10% 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2014)

- 2007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41개의 제조 기업이 무역피해를 인정받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
- 다만, 현재까지 “서비스업 또는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해당되어 지정된 사례는 없음
- o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무역조정지원센터에서 용자 및 컨설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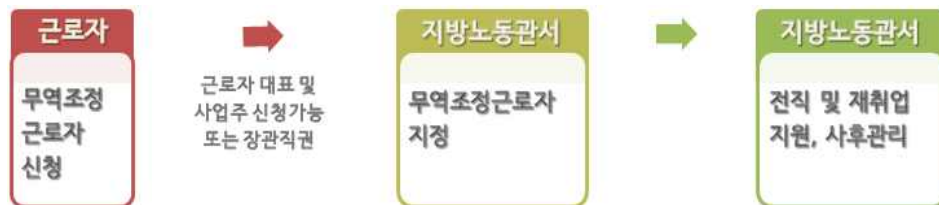
〈무역조정지원사업 주요 지원내용〉

구분	연간예산	지원내용
융자 지원	95억 원	- 융자범위(시설자금, 운전자금) · 시설자금: 생산 및 시험검사 설비(중고설비 포함), 정보화 설비, 임차보증금 및 사업장건축공사비, 사업장확보자금 등 ·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한 소요경비 - 융자조건 · 대출기간: 시설자금 8년 이내/운전자금 5년 이내 ·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45억 원(운전자금은 5억 원) (단, 10억 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10억 원)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차감
컨설팅 지원	4.75억 원	- 지원분야: 무역피해 극복에 필요한 경영·기술 컨설팅 전 분야 - 지원한도: 4천만 원(소요비용의 80% 이내)

주: 연간예산은 2014년 기준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2014)

- (무역조정지원근로자) 무역피해로 실직하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되어 전직 또는 재취업 지원을 받게 됨

〈근로자의 무역조정지원사업 지원 절차〉



- 무역조정지원근로자는 실직하거나 근로시간이 30% 이상 단축(2개월 연속 평균 근로시간을 직전 6개월과 비교)된 근로자로서 아래의 기업에 소속되었을 때 지정
 - ①무역조정지원기업, ②무역조정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매출액의 20% 이상), ③FTA 체결에 따른 상품 수입 증가로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의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
- 고용노동부에서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하면 고용정책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전직 또는 재취업 지원을 받게 됨²⁾

2) 전직지원장려금, 전직서비스위탁제도, 고용유지지원금, 훈련과정공모제, 훈련바우처제도, 훈련연장급여, FTA신속지원팀, 농어민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여러 지원책 마련(「한미 FTA 고용대책」, '07. 6월, 11개 부처 공동)

- (전직지원장려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무역조정지원근로자에게 전직지원을 할 경우 한시적으로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의 전액 지원
- (전직지원서비스 민간위탁) 기업단위의 전직지원이 곤란한 자 등에 대해 업종 또는 지역 단위로 전문 업체를 공모·선정하여 무역조정 근로자에게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정 추이】

- FTA 확대에 따라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동 제도를 개정
 - 한·미 FTA 타결 이후 서비스 부문 개방이 이슈화되면서 서비스 부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원 대상을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서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
 - 무역조정지원제도는 2006년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로 도입되었으며, 제조업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그러나 2007년 지원 대상을 서비스 부문까지 확대하면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07.12월)하고, 기존 제도의 미비점³⁾ 보완
 - 무역자유화로 인한 피해 우려 증가 및 엄격한 발동요건으로 기존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무역조정지원의 피해기준을 완화하여 수혜 대상 확대
 - * 피해기준을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25% 이상 감소('06.4월)에서 20% 이상 감소('11.9월) → 10% 이상 감소('12.1월)로 대폭 완화
 - 또한,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없이도 경영 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담 지원이 가능⁴⁾하도록 하였으며, 절차의 간소화로 운영 효율성 제고

〈FTA 확대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사업 개정 추이〉

	'06.4월	'07.12월	'11.9월	'12.1월
관련법령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업종	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서비스업 전체		
피해기준*	25% 이상	25% 이상	20% 이상	(용자)10% 이상 (건설팅)5% 이상

주: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일정비율 이상일 것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3) 무역조정지원 대상 업종의 확대 이외에도 ▲무역조정기업 신청자격 보완, ▲심각한 피해의 기준 보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무역조정기업 지정 전 상담 지원을 가능하도록 함
- 4) 무역조정지원 미지정기업 일지라도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피해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지원 가능. 이 때, 무역피해 승인 기준은 6개월간의 총매출액이 5% 이상 감소한 경우로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요건(10% 이상 감소)보다는 완화

2. 해외 무역피해 지원제도

(1) 미국의 무역조정지원(TAA ; Trade Adjustment Assistance) 프로그램

□ 미국은 1962년부터 무역조정지원(이하 TAA) 프로그램을 도입, 시장 개방에 따른 근로자 및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 미국의 TAA는 「1962년 무역확대법(Trade Expansion Act)」 제정으로 도입

- 「2002년 무역법(The Trade Act of 2002)」 등 여러 개정을 거쳐, 동 제도를 강화하였으나, 현재는 「2011년 무역조정지원법(Th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Act of 2011)」의 일몰규정 발동 중⁵⁾

○ 미국의 TAA는 지원 대상을 크게 근로자, 기업, 농업으로 구분하여 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 TAA의 핵심은 근로자 지원으로 전체 예산의 90% 이상이 근로자 TAA에 배정

〈미국 TAA 주요 내용 요약〉

	근로자 TAA	기업 TAA	농업 TAA ⁶⁾
도입시기	1962년 무역확대법 (Trade Expansion Act of 1962)		2002 무역법 (Trade Act of 2002)
주관부처	노동부 고용훈련청 (DOL ETA)	상무부 경제발전청 (EDA)	농림부 외국농산물서비스
시행기관	노동부 고용훈련청 (DOL ETA)	무역조정지원센터 (TAA Center)	지역 농업진흥청 (Local FSA Service Center)
연간예산	656백만 달러	16백만 달러	22.5백만 달러
지원내용	소득지원, 직업 훈련, 구직 및 이주비용 지원, 의료보험 세금공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비용 지원	기술 지원 및 현금(최대 1.2만 달러) 지원

주: 연간예산 기준은 근로자 TAA는 '14년, 기업 TAA는 '13년, 농업 TAA는 '11년 기준
자료: CRS(2014), EDA, U.S. Department of Commerce, ISDA FSA(2011)

5) 현재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일몰규정(the Sunset Provisions)이 발동 중이며, 2020년까지 동 프로그램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법안(Trade Adjustment Assistance Extension Act of 2014)이 의회 상정 중. 통과되지 않으면 2014. 12. 31에 프로그램 종료 예정

6) 농업 TAA는 「2002년 무역법」 개정 시 처음 도입되었으며, 수입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여 소득이 감소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기술지원과 현금지원을 제공하며, 근로자 TAA에서처럼 직업교육에도 참여 가능하게 함

가. 근로자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Workers)

- ☐ 근로자 TAA는 무역자유화에 따른 실직시 재취업 촉진을 위한 훈련 및 훈련기간 중의 소득 등을 지원
- o (인증기준)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에서 상당수의 근로자가 해고 또는 해고 위험이 있으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때,
 - ①근로자 소속 기업의 경쟁상품 수입이 급증하거나, ②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할 경우, ③TAA 인증 기업에 납품을 하는 경우 또는 계약이 소멸할 경우 등
 - o (지원내용) 시장개방에 따른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소득지원(TRA ; Trade Readjustment Allowance)⁷⁾, 직업훈련, 구직서비스 등을 제공
 - o (지원절차) 2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①무역피해를 입었음을 알리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②청원서가 승인되면 지역 고용센터에서 다양한 TAA 서비스를 신청

〈미국의 근로자 TAA 운영 현황〉

(단위: 명, 백만 달러)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TAA 인증 근로자	126,633	201,774	287,026	104,743	81,510
훈련 지원					
신규참여근로자	38,189	58,190	46,552	23,493	13,041
훈련기금	260	685	685	425	575
TRA 지원					
신규수급근로자	42,000	11,111	14,711	18,524	13,343
비용	523	128	94	207	213

주: TAA 인증 근로자는 TAA 청원이 인증된 그룹에 소속된 근로자 수의 추정치
 자료: U.S. Department of Labor

나. 기업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Firms)

- ☐ 기업 TAA는 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입 급증으로 매출, 생산 및 고용 등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에 경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컨설팅 제공

⁷⁾ 소득지원(TRA)은 직업 훈련을 받는 자에 한해서 정규 실업급여(UI) 만기 후부터 실업급여와 동일 수준에서 지급되며, 지원기간은 정규 실업급여 지원 기간(26주간)을 포함하여 최대 130주까지 지원

- (인증기준) ①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근로자의 5% 또는 50인이 실직 또는 실직위험에 처할 경우, ②총 매출 또는 생산액이 현저하게 감소할 경우, ③동종 상품 수입증가가 매출, 생산, 고용 감소에 기여하였을 경우 등
- (지원내용) 기업 TAA는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마케팅을 통한 판매 증가 전략, 생산 비효율 개선 방안, 자금 조달 컨설팅 등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지만, 금융 지원은 미포함⁸⁾
- (지원절차) 3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①무역피해기업 인증(미 상무부 경제발전청: EDA), ②무역조정제안 작성 및 승인, ③무역조정제안 이행 절차를 거침

〈미국의 기업 TAA 지원 절차〉



- * 무역피해기업으로 인증되면, 기업은 2년 내로 무역조정에 대한 제안서(Adjustment Proposal)를 작성하며, 작성 시 컨설팅을 지원함. 제안서는 기업의 무역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근로자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무역조정에 기업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로 승인 결정

〈미국의 기업 TAA 운영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무역피해 인증기업(개사)		330	149	79	105
이행비용	총비용(백만 달러)	32.2	21.7	10.5	12.0
	정부부담(백만 달러)	16.4(51.1%)	11.1(51.1%)	5.4(51.9%)	6.2(51.7%)
기업 당 정부지원금(달러)		62,307	60,522	53,308	54,325

주: 기업 당 정부지원금은 이행시 정부지원금을 무역조정제안 승인 기업수로 나눈 금액
 자료: EDA, U.S. Department of Commerce

8) TAA 시행 초기에 융자 등의 직접적인 금융 지원이 포함되었으나, 1986년부터 높은 이행비용 및 효율성 저해를 이유로 기업 직접 지원은 중지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만 제공

(2) EU의 무역피해 지원제도

□ 유럽세계화조정기금(EGF ; 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⁹⁾

- 유럽연합은 무역자유화 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이하 EGF)을 창설하였으며, 세계무역패턴의 구조적 변화로 발생한 대량 실업에 대해서 근로자를 지원¹⁰⁾
 - EGF는 200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연간예산은 최대 150백만 유로로 회원국의 신청 건에 대해 재취업 또는 창업 지원을 위한 비용의 60%까지 부담
 - EGF는 기금 운영 역사가 길지 않지만, 현재까지 총 129건의 신청에 대해 498백만 유로를 106,711명의 실업 근로자에게 지원

〈유럽세계화조정기금 운영 현황〉

신청 (건)	철회 (건)	실업근로자 (명)	회원국 부담 (백만 유로)	EGF 부담	
				총액(백만 유로)	1인당(유로)
129	11	106,711	361.6	498.0	4,667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4.2.14)

- EGF는 노키아, 에어프랑스, 사브(Saab) 등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무역자유화로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기업의 근로자를 지원해 옴
- * 지원규모(실업 근로자수, 지원기금): 노키아(3,719명, 9.8백만 유로), 에어프랑스(2,540명, 22.8백만 유로), 사브(1,350명, 5.5백만 유로) 등

9) 이 외에도 유럽세계화조정기금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럽구조기금(European Structural Fund)이 있음. 유럽구조기금은 경제통합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여 취약산업이나 낙후된 지역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목표이며, ▲유럽사회기금, ▲유럽지역개발기금, ▲유럽농업지원보증기금, ▲수산업지원재정기금으로 구성. 유럽구조기금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되는 사전적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원방식이라면,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은 무역자유화로 실업 피해를 당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이며 직접적인 지원 방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10) 구체적으로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은 ①단일 기업에서 공급업체나 하위 벤더를 포함하여 4개월 동안 500명 이상의 실업이 발생하거나, ②단일 또는 지역경제 내의 특정 산업에 대량 실업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구직, 경력관리, 교육 및 훈련, 멘토링 및 코칭, 창업 등을 지원하며, 사회안전망 차원의 퇴직연금 또는 실업급여 등은 지원하지 않음

3. 한국과 해외 제도 비교

(1) 한국과 미국의 제도 비교

□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 도입 시 미국의 TAA를 벤치마킹하였기 때문에 유사점이 많지만 미국 TAA 프로그램이 ▲근로자 지원 중심이며, ▲FTA를 포함한 무역피해 전반에 대해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 미국 TAA는 전체 예산의 90% 이상을 근로자 TAA에 배정하여 근로자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업 지원 중심이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산업정책적 성격이 강함

○ 미국 TAA의 경우 무역자유화로 인한 피해만 입증(①+②)하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FTA 관세철폐로 인한 피해를 입증(①+②+③)해야 함

* 인증기준 : ①매출, 생산, 고용 등의 감소 여부, ②주생산품 또는 대체가능품목의 수입 증가 여부, ③수입국이 FTA 대상국이며, 해당 품목의 관세 인하 여부

□ 미국의 기업 TAA는 ▲인증기준이 덜 까다로운 대신 융자 혜택 없이 컨설팅 지원으로 한정되고, ▲무역조정제안 작성시 컨설팅이 제공되며,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정부 부담 수준이 낮음

○ 미국은 FTA와 무역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며 컨설팅 지원이 조정지원의 핵심이지만, 우리나라는 FTA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컨설팅 보다는 융자 지원 위주

○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무역조정제안서 작성 때부터 충분한 시간(2년) 및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총 비용의 75%)하기 때문에 무역조정이행시 실패 위험을 최소화

○ 무역조정이행 비용에 대한 미국의 정부부담률은 최근 5년간 평균 51.3%로, 총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우리나라보다 정부 부담 수준이 낮음

- 미국의 근로자 TAA는 우리나라와 ▲인증기준, ▲지원내용, ▲지원신청자격 등에서 차이를 보임

〈한국과 미국의 근로자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주요 차이점〉

	한국	미국
인증기준	근로자 소속기업이 ①무역조정지원기업, ②무역조정지원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③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일 경우 등	근로자 소속기업의 ①경쟁상품수입이 급증하거나, ②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③TAA 인증기업에 납품하는 경우 또는 계약이 소멸할 경우 등
지원내용	실업급여 및 구직자(실업자) 훈련제도	실업수당 외에 TAA 소득지원 등
신청자격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 대표 등	동일기업/부서의 세 명 이상의 근로자, 사업주, 노조 대표, 고용센터 운영자 등

-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근로자의 무역조정지원제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보다 기업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하위사업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보임
 - 인증기준 비교시 우리나라는 근로자 소속기업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근로자는 지정 신청이 어려움
- 우리나라는 근로자 지원에 있어서 실업 급여 및 구직자(실업자)훈련 제도와의 차별성 부족
 - 미국은 실업수당 외에 TAA 소득지원 등 추가적인 소득 및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일반 실업자에 비해 추가적인 지원은 미미한 수준
- 우리나라는 무역조정지원근로자 신청자격을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 대표 등으로 한정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 동일 기업 세 명 이상의 근로자, 고용센터 운영자 등 보다 많은 사람에게 신청자격을 부여

(2) 한국과 EU의 제도 비교

- 유럽세계화조정기금(EGF)은 대량 실업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훈련제공을 통한 재취업을 지원하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에는 관여하지 않음
 - 우리나라의 무역조정지원은 FTA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며, 무역조정지원센터 역시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에 설치되는 등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체제
 - 반면, EGF는 500명 이상의 대량 실업 발생 여부에 의해 지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로 대기업 근로자를 지원

Ⅲ. 무역조정지원사업 활용 현황 및 사례 연구

1. 무역조정지원사업 활용 현황

(1) 기업의 무역조정지원 운영 실적 및 현황

- 2007년 동 제도 도입 이후 총 41개사가 FTA로 인한 무역피해를 인정받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융자 및 컨설팅으로 약 140억 원 지원

〈연도별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원현황〉

(단위 : 개사, 천만 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5월	합계
신청건수		3	3	2	－	13	31	3	55
지정건수		2	3	2	－	8	24	2	41
지원 실적	융자	20.0	50.0	85.0	20.0	148.5	829.9	223	1,376.4 ¹¹⁾
	컨설팅	－	3.2	1.6	1.6	2.7	9.9	3.1	22.1 ¹²⁾
	합계	20.0	53.2	86.6	21.6	151.2	839.8	226.1	1,398.5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2014)

- (연도별 지정현황) ①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이 완화(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동기 대비 25% 이상→10% 이상 감소) 되고, ②양허수준이 높은 EU와의 FTA가 발효된 이후 2012년부터 기업의 무역조정지원 신청 및 피해판정이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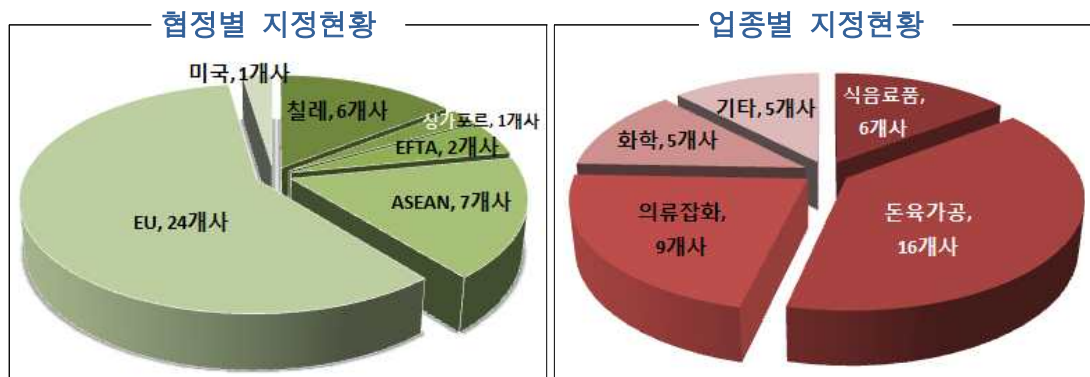
* ('08~'11년)신청 8건/피해판정 7건, ('12년~현재)신청 47건/피해판정 34건

- (협정별 지정현황) 무역조정지원기업(41개사) 가운데 한·EU FTA 피해 업체가 24개사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ASEAN FTA(7개사), 한·칠레 FTA(6개사), 한·EFTA FTA(2개사), 한·미 및 한·싱가포르 FTA(각 1개사) 순임

11) 무역조정지원기업에 집행된 융자지원 137.64억 원 가운데 87.5%가 운전자금(120.43억 원)으로 지원 되었으며, 12.5%가 시설자금(17.21억 원)으로 지원

12) 무역조정지원기업(41개사) 뿐 아니라 무역조정지원 미지정 기업일지라도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이 지원된 경우(15개사)까지 포함할 경우, 컨설팅 지원금으로 총 5.45억 원 집행. 총 집행 금액의 59.3%가 경영컨설팅(3.23억 원), 40.7%가 기술컨설팅(2.22억 원)을 지원하는데 소요

- (업종별 지정현황) 무역조정지원기업 가운데 돈육가공품(16개사)이 가장 많았고, 의류잡화(9개사), 식품료품(6개사), 화학공업(5개사) 순임



〈협정별·업종별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현황〉

(단위 : 개사)

	식품료품	돈육가공	의류잡화	화학	기타	합계
칠레	3	2	-	-	1	6
싱가포르	-	-	-	1	-	1
EFTA	1	-	-	-	1	2
ASEAN	-	-	7	-	-	7
EU	1	14	2	4	3	24
미국	1	-	-	-	-	1
합계	6	16	9	5	5	41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2014)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과반이 한·EU FTA 피해기업으로, 업종별로는 돈육가공업(58.3%)이 가장 많았고, 화학공업(16.7%), 의류·잡화(8.3%) 순
- * 한·EU FTA의 관세인하 효과(25%→12.5~18.1%, 2014년 기준)로 유럽산 돼지고기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축산물 가공 업체의 피해가 상당함
- 한·아세안 FTA로 피해를 입은 기업(7개사)은 모두 의류·잡화 업종으로 관세 인하에 따른 수입 증가가 원인이 됨
- * 한·아세안 FTA의 관세인하 효과(13%→0%)로 골프웨어, 여성의류, 등산화, 운동화 등의 수입 증가
- ** 섬유류의 對아세안 FTA 특혜수입액 규모는 약 35.2억 달러로 對아세안 섬유 수입의 76%가 FTA 특혜로 수입¹³⁾

13) 관세청, 'FTA 무역리포트', '14.4월

□ 지금까지 무역조정 신청 건수는 연평균 10건 이하의 다소 낮은 운영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제조업 자체의 특성, FTA 개방수준, FTA 상대국과 경합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제조업 특성상 농수산물에 비해 FTA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가 바로 경영 악화로 이어져 FTA 무역피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FTA 무역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①FTA 상대국으로부터 주 생산 품목의 수입이 10% 이상 추세적으로 증가해야하고, ②수입증가 원인이 FTA 발효에 따른 것이어야 함(해당 품목의 관세인하 여부로 확인)

- 농수산물과 달리 제조품 수요는 가격 외에 제품 우수성·디자인 차별성·거래이력 등 다양한 요소로 결정되기 때문에, FTA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로 판로를 잃어 매출감소로 이어질 유인이 농수산물에 비해 크지 않음

○ 아세안, 인도 등 신흥 경제국과의 FTA의 경우 FTA 개방수준이 높지 않아 수입 증가가 크지 않음

- 아세안, 인도 등 신흥 경제국과의 FTA는 개방수준이 높지 않고 관세 인하가 아직 완료¹⁴⁾되지 않아 10% 이상의 수입 증가 및 관세 인하를 동시에 입증하기 쉽지 않음

* 한·아세안 FTA의 경우 ①관세인하 스케줄은 최종적으로 '24년에 완료되며, ②對아세안 수입은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07년~'13년간 연평균 8.3% 증가

** 한·인도 CEPA의 경우 對인도 수입은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07년~'13년간 연평균 2.9% 증가

○ EU, 미국 등 선진시장과의 FTA는 개방수준은 높지만 한국의 對FTA 상대국 수입 급증은 대부분 대기업 경합품목에서 나타남

* 한·EU FTA 발효 이후 '11~'13년간 對EU 수입 증가율: 승용차(21.1%), 석유(165.4%), 석유제품(107.2%)

** 한·미 FTA 발효 이후 對美 주요 수입품 가운데 의약품(19.8%, 한·미 FTA 발효 이후, 2년간 연평균 증가율)과 승용차(49.9%)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¹⁵⁾

14) 제현정 외, 「한·아세안 FTA, 끝나지 않은 여정」, 트레이드 포커스 Vol. 13 No 23,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14. 6월.

15) 제현정 외, 「한미 FTA, 이제 시작이다」, 트레이드 포커스 Vol. 13 No.12,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14. 3월.

(2) 근로자의 무역조정지원 운영 실적 및 현황

□ 무역조정지원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조정지원 신청을 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¹⁶⁾

○ 근로자의 무역조정지원을 위해 「한미 FTA 고용대책」 등의 대책마련은 하였으나 실상 지원내용은 기존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및 구직자(실업자) 훈련지원과 크게 다르지 않아 무역조정지원근로자에게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혜택은 거의 없음

- 따라서 무역조정지원기업 소속 근로자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하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아 무역조정지원근로자를 신청하기보다는 기존의 실업급여 및 고용훈련을 지원받는 상황¹⁷⁾

16) 박주선 의원 보도자료('12.10.22)에 따르면 무역조정지원근로자는 근로자가 실제로 무역조정지원을 신청한 사례는 없으며, 무역조정지원근로자 통계는 무역조정지원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로 추산한 자료

17) 무역조정지원기업 대표와의 몇 차례 인터뷰 결과, 근로자의 무역조정지원에 대해 알고 있는 대표자는 전무하였으며, 이를 통해 동 제도의 실효성 뿐 아니라 홍보 역시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2. 무역조정지원사업 활용 기업 성공 사례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무역조정계획 이행을 통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경영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수익구조 개선을 추구
 - 유통 축소 및 구조조정을 통해 매출 확대보다는 수익구조 개선 방향으로 사업을 재구성
 - 단순 제조업에서 관광 및 컨설팅 등의 서비스업으로 사업을 다양화하거나 셀링 포인트 개발로 품목을 다변화
 -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강화로 고부가가치 창출 노력

1 칠레산 와인으로 매출 급락한 D사의 산머루 농장관광화 전략



- FTA: 한·칠레 FTA
- 주 생산품: 산머루 과실주
- 무역조정이행기간: '08.10월-'11.10월
- 지원내용: 융자 4.5억원, 컨설팅 16백만원
- 무역조정지원기업 최초 지정업체

(이미지 출처 : D사 홈페이지)

지리산에서 산머루를 수확하여 와인 등의 과실주를 생산하는 D사는 한·칠레 FTA 발효에 따라 칠레산 와인 수입이 급증하여 전년대비 매출이 45% 감소한 상황이었다.

* 와인 한·칠레 FTA협정관세율: ('04년)12.5%→('06년)7.5%→('08년)2.5%

** 와인 對칠레 수입증가율: ('04년)167.8%→('06년)29.4%→('08년)16.5%

무역조정지원기업 최초 지정, 산머루 농장관광화 추진

무역위원회는 칠레산 레드와인이 과실주로서 산머루와인과 소비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D사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는 무역조정지원제도 시행 후 첫 번째 지원이었다.

D사는 단순 농산물 가공에서 [산머루 재배-제품가공-농장 관광자원화]를 추진하며,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시작했다.

농협, 할인매장 등의 시중판매를 축소하고 인터넷 및 고객 방문을 통한 직접 판매 방식으로 판매 경로를 재구성하였다. 유통 축소로 인해 매출은 감소하였으나 인건비 및 판매비 절감에 따라 수익 구조는 개선될 수 있었다.

컨설팅을 통해 신규 브랜드를 개발하고, 주 수요층을 분석하여 연령 및 성별을 고려한 타겟 마케팅을 실시하며, 볼거리 제공을 위한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산머루농장의 관광사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아름다운 전원농장 조성, 방문객을 통한 매출 증진



단순 과실즙 제조에서 관광서비스를 추가함에 따라 산머루 농장 방문객을 통한 매출이 증진되기 시작하였다. 입소문이 나면서 2013년에만 2만여 명이 방문하였고, 2014년에는 4-5만 명의 방문객이 예상된다.

D사는 향후 한국의 대표적 토종 와인 및 와이너리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 관광농원 콘텐츠 추가 개발 및 숙박시설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 유럽 명품백과 지갑 수입으로 타격, 다양화 전략으로 재도전



- FTA: 한 · EU FTA
- 주 생산품: 핸드백 및 지갑
- 무역조정이행기간: '12.11월-'15.11월
- 지원내용: 융자 4.0억 원

(이미지 출처 : L사 홈페이지)

한 · EU FTA 발효 후, 대기업의 유럽 명품 직수입 등으로 브랜드 파워가 부족한 대부분의 국내 피혁 · 잡화 생산업체가 도산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는 상황이었다.

핸드백 및 지갑을 생산하는 L사는 매출 부진으로 10여개의 백화점에서 철수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보 제공으로 무역조정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판매방식을 변경하고 상품을 다양화, 브랜드 컨설팅으로 재도약

L사는 백화점 영업 위주에서 탈피하여 로드샵 중심으로 판매방식을 변경하고, 가죽류 제품 위주에서 섬유류인 넥타이, 스카프, 소품 등으로 품목을 확대하여 수익성 개선에 힘썼다.

제품 디자인 및 판매 위주에서 광고 및 브랜드 컨설팅으로 사업을 다양화하여, 현재 기존의 피혁 · 잡화 생산에 70%, 광고 및 브랜드 컨설팅에 30%의 비중을 두고 사업을 재구성하였다.

* 백화점 매장 직원(약 20여명)의 구조조정 후에, 광고기획사를 별도 설립하여 디자이너 7명을 신규 고용

무역조정 성과가 신규 브랜드 등록, 매장 신규 설치로 나타나기 시작

현재까지 2종의 브랜드를 신규 개발하고, 롯데면세점 등 2개의 직영매장과 인천공항 등 3개의 위탁매장을 신규 설치하는 등 L사는 무역조정을 성공적으로 이행중이며, 국내 명품 브랜드로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 FTA: 한·EU FTA
- 주 생산품: 육류가공
- 무역조정이행기간: '12.8월-'15.8월
- 지원내용: 융자 6.27억 원, 컨설팅 37백만 원

(이미지 출처 : B사 제품 판매 인터넷 쇼핑몰)

철저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돈육을 가공 생산하는 B사는 설립 이래 연평균 10억 원 이상의 매출 증가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EU FTA 발효에 따른 유럽산 돼지고기의 수입 증가가 결국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무역피해를 인정받고, 2012년 무역조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친환경 명품 돈육에서 답을 찾다.

경영난을 겪으면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위기가 반복될 것이라는 교훈을 얻은 B사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킬러 아이템을 친환경에서 찾아 명품 돈육으로 승부하기 위해 과감히 투자를 결심했다.

친환경 농가들과 무항생제 사육방식을 조건으로 계약하였고, 항생제가 아닌 매실, 배, 콩 등 친환경 사료를 사용하여 건강하게 자란 좋은 육질의 친환경 돈육을 제공하여 소비자를 공략하기 시작하였다.

소비자와의 접점을 찾아 다양한 유통망 확보 노력

B사는 친환경 명품 이미지를 강조하여 인터넷 쇼핑몰 및 친환경 유통업체로 판로를 확장하였다. 보다 적극적으로 돈육 판매 촉진을 위해 삼겹살 직화구이기계 개발을 완료하고,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를 위한 구이 전문점 프랜차이즈 설립을 추진 중이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먹거리 제공을 위해 돈육 가공제품인 햄, 소시지, 돈까스 등을 개발하여 소비자 니즈에 맞도록 생산 제품을 다양화하고 있다. B사는 기업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고자 경영혁신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3.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제도 개선 요청사항

☐ 무역조정지정기업은 보다 효과적인 기업지원을 위해 기업이 무역조정 계획서 작성부터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

- 현재 무역조정계획서 작성은 무역조정지원센터에서 지원중이나 계획서 작성에 전문적인 컨설팅과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지 않는
- 컨설팅 지원을 통해 융자금의 효과적 활용방안, 기업에 필요한 컨설팅 분야, 성공적인 이행시 기업의 예상수익 등 계획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진단 및 이행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컨설팅 요구
 - 기업의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미국 TAA와 같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시간(2년) 및 전문성을 가지고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컨설팅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조정과정에서 실패 위험을 최소화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컨설팅 효율성 제고 요청

- 농축산 가공업, 의류 및 피혁 제품 등 대표적인 FTA 피해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종별 전문가를 확보하고 기업 니즈(needs)에 맞는 컨설팅 제공
- 경영 및 마케팅, 기술개발 등 분야별로 다양한 역량을 가진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기업의 선택권 보장
 - * 예를 들어 관광농장 홍보를 위해 단순히 여행사 리스트 제공하는 컨설팅이 아니라 SNS 전문가, 파워 블로거 등 중소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마케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전문가 확보가 필요
- 컨설팅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기업이 컨설팅에 대한 피드백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컨설팅 서비스의 품질 제고

IV. 결론 및 향후 과제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안 요약〉

기업 무역조정지원 개선방안	근로자 무역조정지원 개선방안
전문 컨설팅 강화 ① 무역조정계획서 작성부터 전문 컨설팅과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조정과정에서 실패위험을 최소화 ② 업종별·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컨설팅 효율성 제고 FTA로 무역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및 서비스업 관련해서 지원체계 마련 필요	근로자 무역조정지원 정상화 ① 기존 실업급여제도 및 실업자(구직자)직업훈련과 차별화된 대책 마련 필요 ②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신청자격 확대, ▲모호한 기준 명확화 ③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 및 홍보 강화 필요 대량실업 대비책 마련 유럽세계화조정기금과 같이 대기업 및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 확대

✓ 가격경쟁 → **[혁신·R&D]** → 비가격경쟁력 강화 (브랜드 육성 및 마케팅 지원)

✓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실패 구제 수단이기 보다 새로운 기회라는 인식 전환 필요



무역협회 설문조사 결과('14.3월, 무역업체 1,000개사 대상)

- 무역업체가 바라는 조기타결 FTA: **한·중 FTA(1위, 44.8%)**
- 한·중 FTA 고려사항: **국내피해산업 보호조치(2위, 18.3%)**

✓ 한·중 FTA 타결을 대비하여, **FTA 안전망으로써 무역조정지원 개선 필요**

-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로 발생하는 피해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되었으며, 현재까지 41개의 기업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어 구조조정 및 경영 혁신을 통해 경쟁력 강화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무역조정계획 이행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3.41억 원의 융자 및 컨설팅 지원을 받고 있음
 - * 3.41억 원 중 융자지원이 3.36억 원으로 전체지원의 98.4% 차지(컨설팅 지원 1.6%)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사업 및 품목을 다양화하며,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강화로 수입 상품과 차별화하는 등 무역조정을 성공적으로 이행 중

○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을 무역조정 계획 단계까지 확대, ▲다양한 전문가 풀 확보 및 컨설팅 사후평가 실시, ▲FTA 확대에 따른 추가 지정 등의 검토가 필요

○ 또한 무역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나 서비스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피해 인정 기준 및 지원내용 등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됨

□ 기업의 구조 조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위해 근로자의 무역조정지원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고용 안전망 차원에서의 지원만 되고 있어 제도 정비가 시급

○ FTA 확대에 따른 피해 근로자 지원을 위해 「한미 FTA 고용대책」(‘07. 6월, 11개 부처 공동)을 마련하였으나, 현재 무역조정지원근로자 지원 관련하여 체계적 지원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부족

○ 체계적인 근로자 지원을 위해 현행 고용안전망 차원의 지원과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

- 근로자 지원을 기존 실업급여 및 구직자 대상 직업훈련과 차별화하여 FTA 피해 근로자들의 역량 강화 및 원활한 전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무역조정지원근로자 신청자격을 확대하여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 대표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소속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 지원에 무관심하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신청과정에서 불편 초래

○ 또한,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근로자 지원시 모호한 기준들을 명확하게 하며,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 사업 홍보를 통해 무역자유화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

□ 향후 한·중 FTA 체결 등을 대비하여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보완 및 재정비가 요구됨

○ 무역업계는 한·중 FTA 협상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국내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을 원하고 있어, 한·중 FTA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산업계의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조기 타결을 희망하는 FTA로 한·중 FTA가 1위(44.8%) 차지, 한·중 FTA의 고려사항으로 국내 피해산업의 보호조치(18.3%)가 최종재 관세철폐(29.3%)에 이어 2위 차지¹⁸⁾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실업에 대해서 제도적 지원 장치 필요

- 현 제도는 중소기업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실업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무역 피해에 대해서는 무방비

*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이 500명 이상의 대규모 실업 발생시 근로자 재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까지 지원대상 확대를 검토할 필요

□ 보다 근본적으로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 및 정부의 노력과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

○ 기업은 내수시장에서 수입품과의 가격경쟁보다 경영혁신 및 R&D를 통해 비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특히, 소비재의 경우 수입품과 경쟁할 수 있는 브랜드 육성 및 마케팅 관련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

○ 무역조정지원제도가 FTA로 실패한 기업의 구제 수단이 아니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도약대와 같다는 인식전환이 필요

18) 명진호 외, 「무역업계가 바라본 한국의 FTA 10년」, 트레이드 포커스 Vol. 13 No.20,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14. 4월.

[참고문헌]

관세청, 'FTA 무역리포트', '14. 4월

명진호 외, 「한국의 FTA 10년, 한국의 FTA 10년 성과 ①」, 트레이드 포커스 Vol. 13 No.20,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14. 4월

명진호 외, 「무역업계가 바라본 한국의 FTA 10년, 한국의 FTA 10년 성과 ③」, 트레이드 포커스 Vol. 13 No.20,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14. 4월

박혜리,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 KIEP 지역경제 포커스 Vol. 6 No. 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 3월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발효대비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 협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07. 8월

'FTA 피해 기업·근로자 지원, 예산집행률 27.6% 불과,' 박주선 의원 보도자료, '12.10.22일

임혜준, 「사회안전망 측면에서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08. 12월

제현정 외, 「한미 FTA, 이제 시작이다, 한미 FTA 발효 후 2년의 성과와 향후 對美의 수출 유망품목」, 트레이드 포커스 Vol. 13 No.12,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14. 3월

제현정 외, 「한·아세안 FTA, 끝나지 않은 여정」, 트레이드 포커스 Vol. 13 No 23,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14. 6월.

'한미 FTA 고용대책,' 관세부처 합동, '07. 6월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Firms: Economic, Program, and Policy Issues,' J. F. Hornbeck, August 5, 2013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Workers,’ Benjamin Collins, March 5, 2014

Fiscal Year 2013 Annual Report to Congress, ‘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Firms Program,’ 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Commerce

Fact Sheet, ‘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 for Farmers,’ Farm Service Agency,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April 2011

Library Briefing, ‘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 : Tackling job losses due to changes in trade patterns,’ Library of the European Parliament, Sep 9, 2013